

메타버스 자율규약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메타버스 자율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은 「가상융합산업진흥법」 제27조 및 관련 법령과 합의에 따라 협약사가 자율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용자들을 보호하고 메타버스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메타버스”란 이용자의 오감을 가상공간으로 확장하거나 현실공간과 혼합하여 인간과 디지털 정보 간 상호 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하 “메타버스기술”이라 한다)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적·경제적·문화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된 가상의 공간이나 가상과 현실이 결합한 공간을 말한다.
2. “메타버스산업”이란 메타버스기술 또는 메타버스 관련 서비스나 기기·상품 등(이하 “메타버스서비스등”이라 한다)의 개발·제작·출시·판매·제공·임대 등(이하 “개발등”이라 한다)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3. “메타버스사업자”란 메타버스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4. “이용자”란 메타버스사업자가 제공하는 메타버스서비스등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5. “협약사”란 메타버스사업자 중 이 규약(규약에 따른 세칙, 가이드라인 등을 포함한다)을 준수할 것에 동의하고 사단법인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와 협약을 맺은 자를 말한다.

제3조(일반원칙) ① 협약사는 안전하고 경쟁력 있는 메타버스기술 또는 메타버스서비스등의 개발등을 통해 국민경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② 협약사는 이용자가 안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메타버스기술 또는 메타버스서비스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협약사는 법령 및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상관례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여야 한다.

④ 협약사는 다른 메타버스사업자, 콘텐츠 창작자 및 메타버스산업 종사자들과의 공존과 상생을 통해 메타버스산업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협약사의 권리와 의무

제4조(협약사의 권리) ① 협약사는 메타버스 자율규제의 주체로서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1. 자율규제 관련 절차 및 프로그램 등 참여
2. 메타버스산업 관련 기본계획 수립 등 관련 의견 개진이나 정책 건의·제안
3. 메타버스산업 관련 애로사항 및 규제 등의 개선 건의·제안
4. 자율규제 참여 또는 포상 사실 홍보

5. 그 밖에 협회에서 추진하는 사업 또는 프로그램 등 참여

② 협회는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건의나 제안을 받은 경우 “메타버스 자율규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부나 관련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협회는 제1항 제4호에 따른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인서와 확인 로고를 교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법령준수·협조의무) ① 협약사는 법령, 이 규약과 이 규약에 따른 시행세칙, 운영규정, 가이드라인 등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협약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발표한 ‘메타버스 윤리원칙’과 ‘메타버스 실천윤리’에서 제시하는 3대 지향가치(온전한 자아·안전한 경험·지속가능한 번영)와 8대 실천원칙(진정성·자율성·호혜성·사생활 존중·공정성·개인정보 보호·포용성·책임성)을 자신의 메타버스서비스등과 내부운영·통제체계 등에 구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협약사는 위원회의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자 보호) ① 협약사는 메타버스서비스등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사전에 마련하고, 이용자에게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적시에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제공하며, 유사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협약사는 메타버스서비스등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이용자가 제기하는 민원 등을 「소비자기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소비자보호 법령 및 약관·운영정책 등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③ 협약사는 제2항의 민원을 접수·처리하기 위한 체계와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분쟁해결) ① 협약사는 메타버스서비스등과 관련하여 협약사와 협약사 사이, 협약사와 이용자 사이 또는 이용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 등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체계와 절차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협약사는 제1항의 분쟁을 처리하기 위한 체계와 절차를 구축·운영하는 대신 위원회가 운영하는 분쟁조정분과 등 분쟁해결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

③ 협회는 필요한 경우 협약사에 대하여 법률구조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8조(부당한 행위의 금지) ① 협약사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용자의 메타버스서비스등 이용을 거부하거나, 부당한 대가를 요구하거나, 약관이나 운영규정·정책 등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회원탈퇴 또는 이용정지 등 이용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협약사는 정당한 이유없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또는 계약상 근거 없이 다른 메타버스사업자나 자신의 메타버스 플랫폼을 이용하여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협약사는 메타버스 플랫폼 등에서 제공하는 제작 툴 등을 사용하여 아이템, 콘텐츠 등을 제작·판매·제공하는 자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하고, 권리의 구체적인 내용인 행사 방법 등을 계약, 약관, 운영정책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④ 협약사는 관련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

제9조(자율점검) ① 협약사는 본 자율규약 이행여부, 메타버스 윤리원칙·실천윤리 반영 여부 등을 연 1회 이상 자체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협약사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적절히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7조에 따른 포상 등에 있어 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 결과를 참고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트, 가이드라인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규약 위반에 대한 조치) ① 위원회는 이 규약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협회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경고 : 규약을 위반하였으나 위반의 정도나 결과가 경미한 경우

2. 경징계 : 규약 위반이 명확하고 이로 인하여 메타버스산업의 이미지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3. 중징계 : 명백하고 중대한 규약 위반 행위로서 법적 제재나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협회는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단, 경고 및 경징계의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시정 및 재발방지 조치 수립의 요구

2. 확인서 및 확인 로고의 회수 및 사용 중지

3. 자격 정지, 제명 조치 등

제11조(이의제기) ① 제10조에 따른 조치를 받은 협약사는 해당 조치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협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협회는 제1항의 이의를 접수한 경우 해당 협약사에게 추가 주장 소명 및 입증 자료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협회는 협약사 및 위원회의 주장 및 제출 자료를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회비 등) ① 협약사는 이 규약에 따른 메타버스 자율규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협회와 협약사가 협의하여 정한 회비 또는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협약사는 이 규약에 따른 자율규제 프로그램 이용과 관련하여 협회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협회는 소속 회원사에 대하여 수수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3장 사업자 지원

제13조(협력사업) 협회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메타버스 이용 및 메타버스 서비스의 안정적인 기반 조성을 위해 메타버스 관련 콘텐츠·서비스·기기 등에 관하여 협약사와 협력사업을 할 수 있다.

제14조(협의회) ① 협회는 협약사의 자율규제업무 담당자 및 책임자가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

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15조(교육 등) ① 위원회는 협약사에게 메타버스 자율규약, 개인정보 보호법, 저작권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이용자에게 메타버스 윤리원칙 등 건전한 메타버스 이용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협약사에게는 교육이수사실에 관한 표지를 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컨설팅 등) 위원회는 협약사를 대상으로 법률 상담, 메타버스 윤리원칙·실천윤리 및 컴플라이언스 관련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포상 등) ① 위원회는 협약사가 본 자율규약 이행여부, 메타버스 윤리원칙·실천윤리 반영 여부 등의 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메타버스사업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4장 메타버스 자율규제위원회

제18조(자율규제위원회의 설치) ① 협회는 자율규제의 효율적이고 독립적인 운영을 위하여 협회 정관 제28조 제2항에 따라 “메타버스 자율규제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2. “메타버스 서비스” 해당 여부 심의에 관한 사항
3. 메타버스 관련 분쟁조정 업무에 관한 사항
4. 약관 및 계약서에 관한 사항
5. 자율규약, 시행세칙, 가이드라인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6. 분과위원회 운영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7. 메타버스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 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
8. 메타버스사업자의 규약 준수 여부의 확인 등에 관한 사항
9. 메타버스사업자의 자율규약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제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자율규제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메타버스산업·이용자 보호·법률·교육·언론·정보통신·공학 분야에 종사하거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활동하는 메타버스산업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협회 회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과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단체 또는 기관에서 추천한

자는 해당 단체 또는 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정한다.

제20조(회의의 소집)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3인 이상 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사항 등을 정하여 각 위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제21조(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할 수 있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유를 각 위원에게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은 임기 중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도 받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직되거나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1. 위원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2. 회계부정 등 현저한 부당행위를 한 경우
3. 위원 간 불필요한 분쟁을 야기하는 등 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심신상의 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23조(분과위원회의 설치)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분과위원회의 구성, 업무 및 회의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분과위원회 운영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24조(사무국) 협회는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사무 처리 및 자율규약 위반에 대한 신고 접수 등을 위해 사무국을 설치한다.

제25조(기타) 제18조부터 제24조까지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분과위원회, 사무국의 구성·운영 등에 대해서는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제26조(규약등의 개정 및 폐지) ① 위원회는 본 규약, 시행세칙, 가이드라인 등(이하 “규약등”이라 한다)을 제·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그 내용을 10일 이상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

고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공고 및 의견청취를 생략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긴급한 사유로 개정 및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2. 관계 법규의 제·개정 및 폐지에 따라 규약등을 개정 및 폐지하거나 서식을 제정·개정 및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3. 규약등의 제·개정에 따라 협약사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경우
- ② 규약의 제·개정 또는 폐지는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장은 규약등을 제·개정 또는 폐지한 경우 지체 없이 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비협약사의 참여) 협약사가 아닌 자 중 본 규약에 따른 절차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협회와 별도의 약정을 맺고 해당 절차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제28조(시행세칙) ① 위원회는 이 규약의 시행을 위하여 시행세칙을 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메타버스산업과 융·복합되는 개별 산업분야별 시행세칙을 마련할 수 있다.

제6장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규약은 협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초대위원 위촉) 제1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초대 자율규제위원회 위원은 협회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위촉한다.